

문서번호	교육청소년과-3275
결재일자	2015.2.1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도청 아동복지담당	교육청소년과장	교육문화복지국장		
이상훈	강은주	최병재	02/12 도일환		
협 조					

**2015년 드림스타트
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채용 계획**

2015. 2.

**교육문화복지국
교육청소년과**

2015년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채용 계획

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중 2.28자 퇴직예정자가 있어 드림스타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을 채용하고자 함

I 관련 규정

■ 드림스타트 법적 근거 및 지침

- 아동복지법 제37조(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)
-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(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)

■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채용 근거

- 보건복지부 지침 「2015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」

『2015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』 - 30p

02 조직 구성 및 주요업무

가. 조직 구성 및 역할

2) 운영관리

○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

-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체예산부담 공무원 이외에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을 건강·복지·보육(교육) 영역별로 채용
- 지역별 기본 4명 배치, 사례관리 아동수에 따라 최대 7명까지 채용 (전문요원 1인당 사례관리 아동 수 60~80명 권장)

II

채 용 개 요

■ 드림스타트 현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현황

연번	성 명	생년월일	분야	근무기간	비고
1	김혜현	81.11.11	인지/언어	11. 02. 17. ~ 현재까지	
2	윤문이	79.01.29	신체/건강	12. 10. 02. ~ 현재까지	
3	이경숙	71.12.27	정서/행동	13. 07. 18. ~ 현재까지	
4	임인선	93.01.05	인지/언어	14. 02. 01. ~ 현재까지	15. 02. 28.일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예정 (15. 02. 28.일자 사직서 제출)

■ 채용 분야 및 인원

구분	내 용
채용분야	정서/행동 복지서비스 분야
인원	1명

■ 채용방법 : 공개채용

■ 채용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15.12.31까지

■ 응시자격

가. 자격요건

-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

※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및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

나. 응시연령 : 만20세 이상

다.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

라.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각호에 해당되지 않고, 기타 법령에 의해
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며,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마. 관련분야 자격증,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, 관련분야 경력 소지자 우대

바. 근면성실하며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

Ⅲ

추진일정

■ 채용 공고기간 : 2015. 2. 12. ~ 2015. 2. 22.

■ 채용 접수기간 : 2015. 2. 23. ~ 2015. 2. 25.

- 근무시간 내 접수 (09:00 ~ 18:00)
- 접수장소 : 성북구 아동청소년센터 3층 드림스타트
- 접수방법 : 본인 방문 접수
- 제출서류
 - 응시원서 (자기소개서 포함) 1부
 - 관련 자격증 1부 (원본, 사본 모두 지참)
 - 경력증명서 1부 (해당되는 경우)
 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 - 채용신체검사서 1부 (최종 합격시 제출)

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15. 2. 26. 예정

■ 면접시험 : 2015. 3. 2. 예정

■ 최종 합격자 발표 : 2015. 3. 5. 예정

- 단, 최고득점자가 본 사업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최종 합격자 미선발

Ⅳ

근무조건 및 임금 등

■ 기본급

근무시간	1년차 (1년미만)	2년차 (1년이상~ 2년미만)	3년차 (2년이상~ 3년미만)	4년차 (3년이상~ 4년미만)	5년차이상 (4년이상)
기본급	160만원	165만원	170만원	175만원	180만원

■ 시간외 수당(초과근무)

- 월 20시간 인정, 시간당 8,500원

- 월 최대 17만원

■ 출장여비

- 1일 4시간 미만 1만원, 4시간 이상 2만원 (1일 최대 2만원)
- 월 최대 10만원

■ 후생복지

- 4대보험 가입, 퇴직금 지급

V

재계약 관련

- 성과평가 : 근무기간 성과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
- 성과평가 시기 :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
- 성과평가 방법
 - 성과평가서에 의한 평가 후, 80점 이상 취득자 재계약 체결

붙임 : 채용 공고문 1부. 끝.